

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

지역	기관·단체명	전화번호
서울	(사)서울시장애인부모회	02-468-4889
부산	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	051-790-6125
대구	(사)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	053-621-2600
인천	(사)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	032-818-2096
광주	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	062-229-9701
대전	(사)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	042-488-9457
울산	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	052-242-1780
세종	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	044-866-0180
경기	(사)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	031-239-6340
강원	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	033-255-2491
충북	(사)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	043-237-8304
충남	(사)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	041-338-1762
전북	(사)장애인인권연대	063-901-1131
전남	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	061-755-4523
경북	포항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	054-244-9703
경남	(사)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	070-7725-3967
제주	(사)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	064-725-1372

중양장애아동·발달장애아동지원센터는

장애아동,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과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7개 사업수행기관의 실무자 교육,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
한국장애인개발원 중양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02-3433-0757
홈페이지 <http://www.broso.or.kr>

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

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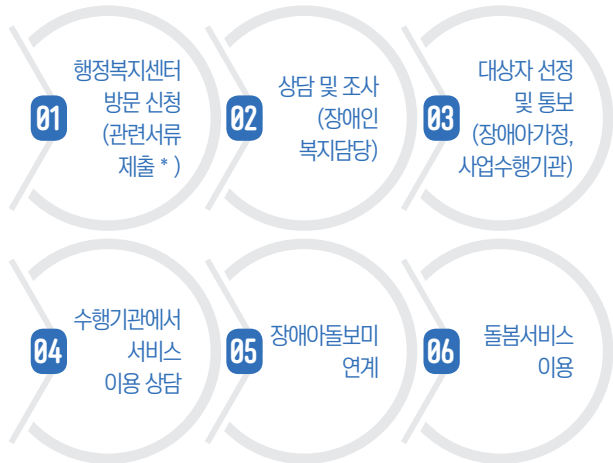
장애아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거나, 역량강화 및 휴식지원을 목적으로 가족캠프, 부모교육, 자조모임 등을 연중 운영하여 장애아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

※ 추진근거 :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(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) 제1항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”

돌봄서비스



- 대 상 :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- 이용시간 : 1인당 연 720시간 이내
- 지원내용 : 일정한 자격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
- 비 용 : 무료
- 이용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
- 이용절차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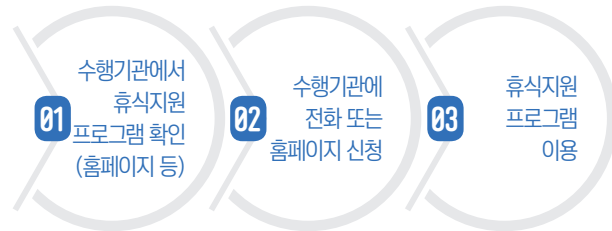


* 관련서류 : 사회복지급여 신청(변경)서,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, 기타 소득 증명자료

휴식지원프로그램



- 대 상 :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가족 (단,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우선 지원)
- 이용시간 : 사업수행기관 별 상이
- 지원내용 : 가족캠프, 부모교육, 자조모임 등 운영
- 비 용 : 무료
- 이용신청 : 거주지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개별 신청
- 이용절차 :



장애아돌보미



- 대 상 : 장애아를 사랑하며 양육 전문가 소양을 갖춘 신체 건강한 70세 이하 누구나
- 활동신청 : 거주지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개별 신청
- 활동절차 :



※ 면접심사 최종합격자는 자격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

교육시간	해당조건
총 40시간	• 사업수행기관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하여 선발된 자
총 20시간	• 특수교사, 사회복지사 • 재활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• 아이돌보미 경력자 (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) •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(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경력이 180시간 이상, 360시간 미만인 자)
면제	•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(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)